

민원 인쇄

인쇄자: 김정덕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04-0538244
신청일	2021-04-13 13:26:30
신청인	김정덕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4층 NGO돋움터 정치하는엄마들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재판(2020누38166) 결과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십시오

내용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1심 일부승소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누38166)

이에 3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 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학교 성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충실히 정보공개 해야함을 판결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3월 30일 공개한 정보에는 '학교명'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스쿨미투 처리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로 학생·학부모·시민들에게 또 다시 공포와 불안 안길 뿐입니다.

항소 기각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요청한 면담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1.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20

20년 일어났던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한 학교명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1.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놓고 법적 다툼으로 혈세를 낭비한 조희연 교육감은 공식 사과 하십시오.

1. 학교성폭력 재발방지 계획과 법원 판결에 따른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및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면담에 나서십시오.

첨부 파일

판결문_스쿨미투_서울고등법원_2020누38166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20201211(항소기각).pdf 판결문_스쿨미투_서울지방법원_2019구합65252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20200305.pdf 2. 정보공개 내용_서울시교육청-202103.xlsx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4-0551077
접수일	2021-04-13 14:39:31
담당자(연락처)	이형주(02-399-9699)
처리에정일	2021-04-21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1-04-21 16:11:37
처리결과 (답변내용)	<p>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이형주 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5382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p> <p>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상기 민원요지 3가지로 이해됩니다.</p> <p>3. 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스쿨미투 학교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공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p> <p>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상기 가. 항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결과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다시 한 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p> <p>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202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 안내_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안내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여론과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피·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p>

4.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이형주 주무관(☎ 02-399-969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